

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진 고용 권리 및 ADA

미국 장애인법(ADA)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입니다. 이것은 ADA가 장애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ADA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장과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,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품목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. 이 정보지는 직업과 관련된 ADA의 타이틀 I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.

제가 ADA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DA에 따르면 귀하가 신체나 두뇌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작동하여 듣고, 보고, 말하고, 생각하고, 걷고, 숨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종종 개인의 장애를 볼 수 있습니다. 걸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폐증, 당뇨병, 암, 학습 문제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
ADA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:

- 그들이 이전에 장애가 있었고 (더 이상 장애가 없더라도),
- 장애가 없지만 누군가가 그들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,
- 장애가 있는 자녀, 부모 또는 결혼한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.

ADA에 따른 제 직업 권리는 무엇인가요?

ADA는 귀하가 구직을 할 때와 직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 직장에서 이러한 보호는 고용, 해고, 교육, 급여, 승진, 복리후생 및 휴가를 포함합니다. ADA에서 휴가는 귀하의 장애가 악화되거나 몸이 아플 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사람들은 또한 귀하가 가진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힐 수 없으며, 고용주는 ADA 권리를 요청한 귀하를 해고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을 할 때와 취직한 후에 합당한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

"합당한 편의"란 무엇인가요?

합당한 편의는 귀하가 구직을 하거나, 일을 하거나,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, 일하는 장소 또는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모든 변경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귀하가 구직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. 그러나 합당한 편의가 있든 없든 귀하가 원하거나 하도록 고용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합당한 편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작업 공간이나 화장실을 더 크게 만드는 등 해당 장애인이 일하는 건물의 변경
- 청각 장애인이 회의나 교육을 받을 때 수화 통역사
-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읽거나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점자 또는 오디오 컴퓨터 파일로 된 교육 및 서면 문서를 제공하는 도구
-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컴퓨터 도구

- 자폐증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더 조용한 작업 공간 또는 헤드폰
- 다운 증후군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
- 장애 치료를 받거나 장애인 보조 동물을 훈련시키기 위해 다른 근무 일정이나 휴가를 허용

합당한 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구직 또는 근무 중에 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요청해야 합니다. 구직을 할 때나 일을 시작하기 전 또는 후에 언제든지 합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합당한 편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귀하는 귀하가 가진 장애로 인해 편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. 특별한 양식을 작성하거나 특정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용하는 책상이 휠체어에 맞지 않는 경우 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. 이것은 합당한 편의를 위한 요청입니다. 장애로 인해 휴가를 요청하거나 일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다른 근무 일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도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.

합당한 편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?

편의를 요청하면 고용주는 편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귀하와 이야기해야 합니다. 고용주가 알지 못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, 고용주는 장애로 인해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의사나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을 것을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와 고용주는 합당한 편의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귀하가 요청한 정확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. "합리적"이어야 합니다. 그러나 편의는 귀하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편의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고용주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효과가 있는 다른 일에 대해 귀하와 이야기해야 합니다.

제 ADA 직업 권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가장 가까운 EEOC(평등고용기회위원회)에 문의하세요. EEOC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부 기관입니다. 해당 기관은 고용주에 대한 차별 혐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

EEOC 연락처 정보:

- 800-669-4000 (음성)
- 800-669-6820 (TTY)
- 844-234-5122 (ASL 비디오 폰)
- info@eeoc.gov (이메일)

EEOC 지역사무소 정보: <https://www.eeoc.gov/field-office>

ADA 및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태평양 ADA 센터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: (800) 949-4232 (음성/릴레이), adatech@adapacific.org (이메일)